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홈페이지 준비중

큐브뮤직타운 정보공개서

[큐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큐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8

전화 : 02-534-7171

팩스 :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534-717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큐브	큐브뮤직타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8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6.05.30	채현, 박경자	02-534-7171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72-04-0033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큐브뮤직타운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큐브뮤직타운	-
상 호	큐브뮤직타운 OO점	-
상표(서비스표)	 큐브뮤직타운	출원번호 : 4120150038082 등록번호 : 4103575220000
	 큐브뮤직타운	출원번호 : 4020200017834 등록번호 : 4017449780000
	 큐브뮤직타운	출원번호 : 4020200031131 등록번호 : 4017604180000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250,685	250,685	0	507,042	-182,728	-182,550
2022	687,279	500,070	187,209	3,466,328	870,725	885,287
2023	-	-	-	3,726,727	-	-

○ 2023년의 재무상황은 정보공개일 현재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채현	공동대표	2016.05 ~ 현재	큐브 공동대표	경영총괄
관련임원	박경자	공동대표	2016.05 ~ 현재	큐브 공동대표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큐브뮤직타운] 이외의 가맹사업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 운영을 위한 영업표지 사용	2015.08.11 출원 2016.04.28 등록	출원 4120150038082 등록 4103575220000	박지수	2026.04.28
		2020.02.04 출원 2021.06.28 등록	출원 4020200017834 등록 4017449780000	박지수	2031.06.28
		2020.02.25 출원 2021.08.05 등록	출원 4020200031131 등록 4017604180000	박지수	2031.08.05

○ 당사는 상표권자 채철로부터 상표 사용에 관한 허락을 득하였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큐브뮤직타운 가맹사업 현황

1. 큐브뮤직타운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5월 26일)

2. 큐브뮤직타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큐브	큐브뮤직타운	채현, 박경자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8

3. 큐브뮤직타운 업종

영업표지	업종	
큐브뮤직타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노래주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큐브뮤직타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큐브뮤직타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큐브뮤직타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의 큐브뮤직타운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는 가맹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가맹점 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	-	-	-	-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8. 큐브뮤직타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큐브뮤직타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없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큐브뮤직타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큐브뮤직타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	
광고	-	-	-	-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논현동지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8 충림빌딩 2층	02-554-2300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큐브(가맹본부의 상호)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큐브뮤직타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7,500				
가맹비	22,0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일	금전지급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2,500
가맹비	22,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46,600				165㎡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330,000	6,600	- 계약시 50 % - 중도금 30 % - 완료시 20 %	공사 전 계약취소	부가세 포함
쇼파	협력업체	23,1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테이블	협력업체	28,6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주방 설비, 집기	협력업체	26,4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외부간판, 내부 사인물	협력업체	11,0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반주기, 음향, 조명, 영상	협력업체	24,2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포스기기, 주문패드	협력업체	개별 구입 및 임대		해당없음	좌동	
기타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간판, 냉난방, 전기증설, 소방검사, 철거, 닥트시설, 화장실, 계단 등 현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건적은 별도입니다.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큐브뮤직타운]의 컨셉에 맞도록 시공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지도(공사에 필요한 영업장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제공 등) 및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1,6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 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 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 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큐브뮤직타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납입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3.3%	매월 5일	미 반환	소멸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분담기준에 의함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 이전	광고 시행 이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판촉 시행 이전	판촉 시행 이후	
점포환경 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회계 및 재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 감독 시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큐브뮤직타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큐브뮤직타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큐브뮤직타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고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내용	
해당없음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큐브뮤직타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큐브뮤직타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지 참조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당사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홈페이지에 공지 및 서면을 통한 공문 발송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하고 조리된 음식과 주류를 취급하는 주점 업종	큐브뮤직타운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 별지에 표시할 수 있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 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큐브뮤직타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큐브뮤직타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큐브뮤직타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나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가맹사업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판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큐브뮤직타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사에서 귀하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관련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다만,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율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9조 1항
○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7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9조 가맹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1조 로열티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2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3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4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6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7조 A/S 및 시설 보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8조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9조 경영지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0조 인·허가 및 준수사항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1조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2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3조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4조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5조 접대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7조 회계자료 및 주요사항 통지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환경 유지 및 개선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1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3조 영업의 상속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5조 보험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9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02-534-7171)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큐브뮤직타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하고 조리된 음식과 주류를 취급하는 주점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큐브뮤직타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연중무휴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큐브뮤직타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판촉행사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비용지급 시기는 별도 통지)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큐브뮤직타운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제12조(영업비밀유지의무)

- ① 을은 [큐브뮤직타운]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메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 ④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경업금지의무)

-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계약해지의 경우 계약 잔여기간을 포함) 중에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큐브뮤직타운]과 동일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존속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갑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을이 제1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5조(접대부 금지)

- ① 을은 가맹점 운영 중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 ② 을이 전항을 위반하면 즉시 해지 사유가 되어 본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위약금으로 을은 갑에게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이 제29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과 체결한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을에게 반환한다.
- ④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제30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100,000원)을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⑧ 갑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⑨ 을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갑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7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9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49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8~44(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3(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3~6(38일)	
기기 설치	- 영상장비시설 설치	D-6~3(4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2(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큐브뮤직타운]의 소개와 서비스 특징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지도 2. [큐브뮤직타운]의 매출 증진을 위한 활동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02-534-7171)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3. [큐브뮤직타운]의 경영, 세무 상담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분석 및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부담 (일급220X인원수+ 교통비, 숙박비 등 기타소요비용)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큐브뮤직타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큐브뮤직타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	개점준비, 조리노하우, 기술전수, 매장운영 등	8시간 X 5일 (총 40시간)	최초가맹금 중 교육비에 포함	/
수시교육		개별 협의	실비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특별교육		개별 협의	실비	

○ 교육이수는 세부사항에 따라서 최소시간 및 비용 등 달라지며, 내용 확정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 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7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726,727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2021~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번호	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1	수제 왕새우 튀김	30,000	홈페이지에 공지 및 서면을 통한 공문 발송	
2	순살 치킨 가라야케	30,000		
3	계절과일 플레이트	31,000		
4	과일 화채	31,000		
5	모듬치즈 & 믹스포	33,000		
6	어항가지 & 전복버터구이	32,000		
7	생등심 탕수육	30,000		
8	닭다리살 사천깐풍기	31,000		
9	북경식 유린기	31,000		
10	광동식 칠리새우	31,000		
11	특제 해물 양장피	30,000		
12	큐브 특제 찹스테이크	32,000		
13	감바스	31,000		
14	이태리 수제 칼바사 소세지	30,000		
15	토마토 카프리제 & 리코타치즈	31,000		
16	해산물 샐러드	31,000		
17	치즈 해물 떡볶이	30,000		
18	트리플 치킨 파스타	30,000		
19	부라타 치즈 샐러드	31,000		
20	트리플 새우 관자 구이	32,000		
21	뽕뽕	32,000		
22	문어 카르파초	32,000		
23	카르보나라 파스타	16,000		
24	크림 파스타	16,000		
25	황제 해산물 짬뽕	16,000		
26	수박 빙수	23,000		
27	딸기 빙수	23,000		
28	메론 빙수	23,000		
29	복숭아 빙수	23,000		
30	망고 빙수	23,000		
31	애플 망고 빙수	32,000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큐브(큐브뮤직타운)
	성명(대표자)	채현, 박경자
	주소(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8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